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사이버 건본주택(www.prugio.com/ht/2021/sewoon/)으로 운영합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을 지정하여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건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건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건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및 비접촉체온계 사용 거부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한 경우
 - 비접촉체온계 및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체온 확인 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기타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 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서류검수,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분양 상담 전화(1577-223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도시형생활주택(293세대)과 아파트(321세대(임대주택 40세대 포함))가 혼합된 공동주택으로 금회 공급대상은 아파트(281세대)이며, 도시형생활주택(293세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서울시 중구청 도심재생과-5807호(2020.05.28.)] 및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에서는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0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중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중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2순위 청약 가능)됩니다.
- 본 아파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중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함)까지 전매가 금지되며(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의 해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에 청약시 재당첨 제한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4.)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4.)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9. 05. 0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서울시(주민등록기준)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나,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는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하나,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청약 Home www.applyhome.co.kr 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 시간(**건본 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가상체험”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해당지역 거주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로 특별공급 당첨자발표를 기존과 달리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발표하오니, 특별공급에 신청한 청약자가 일반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모두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은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형 전용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rugio.com/ht/2021/sewoon/>)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 입주자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의 해당 주택의 동 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와 동점이거나 높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 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분양권 전매 안내

① 서울특별시 중구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5.26.)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전매금지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유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유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유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의무거주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불법행위자(불법 전매, 투기, 공급질서 교란 등)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 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중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 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공급일정, 청약 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지정계약기간 안내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해당 (서울 2년이상 거주)	1순위 기타 (서울 2년 미만/경기/인천)	일반 2순위 (서울/경기/인천)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1.05.14.(금)	2021.05.17.(월)	2021.05.18.(화)	2021.05.20.(목)	2021.05.26.(수)	2021.05.27.(목)~2021.05.31.(월)	2021.06.07.(월)~2021.06.11.(금)
방 법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로그인 후 조회 가능)	청약신청 자격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페이지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Home(한국부동산원)앱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 ~ 14:00, 특별공급 신청 해당 접수서류 지참 시 가능, 은행창구 접수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서울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 9298호(2021.05.03.)]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377.2070㎡
-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51,128.6667㎡ 中 공동주택(아파트) : 23,857.8461㎡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9층, 지상26층 1개동 中 공동주택(아파트) 281세대(임대주택 40세대 제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9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281세대(임대주택 40세대 제외))
- 층별용도 : 지하9층~지하2층(기계실, 주차장 등), 지하1층(근린생활시설-도심산업), 지상1층~지상2층(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지상4층~지상15층 공동주택(아파트), 지상16층~지상26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주차대수 총 366대 중 공동주택(아파트) 186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내진등급 1등급을 확보하였음.

■ 입주시기 : 2023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공급 세대 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 부부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213	01	024.5533A	24A	24.5533	12.8162	37.3695	23.9013	61.2708	3.9513	66	8	6	2	13	5	34	32	-
		02	024.5533C	24C	24.5533	13.8850	38.4383	23.9013	62.3396	3.9513	11	1	1	-	2	1	5	6	-
		03	028.4064A	28A	28.4064	14.4958	42.9022	27.6521	70.5543	4.5714	84	8	8	3	17	6	42	42	7
		04	029.4564A	29A	29.4564	14.9680	44.4244	28.6742	73.0986	4.7404	84	8	8	3	17	6	42	42	7
		05	029.4564C	29C	29.4564	16.0368	45.4932	28.6742	74.1674	4.7404	24	2	2	1	5	2	12	12	2
		06	042.2349A	42A	42.2349	21.8390	64.0739	41.1134	105.1872	6.7968	12	-	2	-	2	1	5	7	1
	합계											281	27	27	9	56	21	140	141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임. 대지비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분양구분(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공급 세대수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5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체결일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지정일
							2021.09.03	2021.12.03	2022.03.04	2022.06.03	2022.09.02		
24A	66	5층	6	132,768,371	142,831,629	275,600,000	55,120,000	27,560,000	27,560,000	27,560,000	27,560,000	27,560,000	82,680,000
		6층	6	137,441,278	147,858,722	285,300,000	57,060,000	28,530,000	28,530,000	28,530,000	28,530,000	28,530,000	85,590,000
		7층	6	142,114,185	152,885,815	295,000,000	59,0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88,500,000
		8층	6	146,787,092	157,912,908	304,700,000	60,94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91,410,000
		9층	6	151,508,174	162,991,827	314,500,000	62,900,000	31,450,000	31,450,000	31,450,000	31,450,000	31,450,000	94,350,000
		10층	6	156,181,081	168,018,919	324,200,000	64,840,000	32,420,000	32,420,000	32,420,000	32,420,000	32,420,000	97,260,000

		11층	6	160,853,988	173,046,012	333,900,000	66,78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100,170,000
		12층	6	165,526,895	178,073,105	343,600,000	68,72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34,360,000	103,080,000
		13층	6	170,247,976	183,152,024	353,400,000	70,68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35,340,000	106,020,000
		14층	6	174,920,883	188,179,117	363,100,000	72,620,000	36,310,000	36,310,000	36,310,000	36,310,000	36,310,000	108,930,000
		15층	6	179,593,790	193,206,210	372,800,000	74,560,000	37,280,000	37,280,000	37,280,000	37,280,000	37,280,000	111,840,000
24C	11	5층	1	138,934,681	149,465,319	288,400,000	57,680,000	28,840,000	28,840,000	28,840,000	28,840,000	28,840,000	86,520,000
		6층	1	143,752,111	154,647,889	298,400,000	59,68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29,840,000	89,520,000
		7층	1	148,617,716	159,882,285	308,500,000	61,70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30,850,000	92,550,000
		8층	1	153,435,146	165,064,855	318,500,000	63,70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31,850,000	95,550,000
		9층	1	158,252,576	170,247,425	328,500,000	65,70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98,550,000
		10층	1	163,070,006	175,429,995	338,500,000	67,70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101,550,000
		11층	1	167,887,436	180,612,565	348,500,000	69,700,000	34,850,000	34,850,000	34,850,000	34,850,000	34,850,000	104,550,000
		12층	1	172,704,866	185,795,135	358,500,000	71,70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35,850,000	107,550,000
		13층	1	177,522,296	190,977,705	368,500,000	73,70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110,550,000
		14층	1	182,339,726	196,160,275	378,500,000	75,70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37,850,000	113,550,000
15층	1	187,157,156	201,342,845	388,500,000	77,70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116,550,000		
28A	84	4층	7	148,810,413	160,089,587	308,900,000	61,780,000	30,890,000	30,890,000	30,890,000	30,890,000	30,890,000	92,670,000
		5층	7	154,205,934	165,894,066	320,100,000	64,020,000	32,010,000	32,010,000	32,010,000	32,010,000	32,010,000	96,030,000
		6층	7	159,553,282	171,646,718	331,200,000	66,240,000	33,120,000	33,120,000	33,120,000	33,120,000	33,120,000	99,360,000
		7층	7	164,948,803	177,451,197	342,400,000	68,48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102,720,000
		8층	7	170,344,325	183,255,675	353,600,000	70,720,000	35,360,000	35,360,000	35,360,000	35,360,000	35,360,000	106,080,000
		9층	7	175,739,846	189,060,154	364,800,000	72,960,000	36,480,000	36,480,000	36,480,000	36,480,000	36,480,000	109,440,000
		10층	7	181,087,194	194,812,806	375,900,000	75,180,000	37,590,000	37,590,000	37,590,000	37,590,000	37,590,000	112,770,000
		11층	7	186,482,715	200,617,285	387,100,000	77,420,000	38,710,000	38,710,000	38,710,000	38,710,000	38,710,000	116,130,000
		12층	7	191,878,237	206,421,763	398,300,000	79,66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119,490,000
		13층	7	197,225,584	212,174,416	409,400,000	81,88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122,820,000
14층	7	202,621,106	217,978,894	420,600,000	84,12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42,060,000	126,180,000		
15층	7	208,016,627	223,783,373	431,800,000	86,36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129,540,000		
29A	84	4층	3	159,649,630	171,750,370	331,400,000	66,28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33,140,000	99,420,000
		5층	3	165,237,849	177,762,151	343,000,000	68,6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102,900,000
		6층	3	170,826,068	183,773,932	354,600,000	70,92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35,460,000	106,380,000
		7층	3	176,366,112	189,733,888	366,100,000	73,22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36,610,000	109,830,000
		8층	3	181,954,331	195,745,669	377,700,000	75,54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113,310,000
		9층	3	187,542,550	201,757,450	389,300,000	77,860,000	38,930,000	38,930,000	38,930,000	38,930,000	38,930,000	116,790,000
		10층	3	193,082,594	207,717,406	400,800,000	80,16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40,080,000	120,240,000
		11층	3	198,670,813	213,729,187	412,400,000	82,48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41,240,000	123,720,000
		12층	3	204,259,032	219,740,968	424,000,000	84,8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13층	3	209,799,077	225,700,924	435,500,000	87,10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130,650,000
		14층	3	215,387,295	231,712,705	447,100,000	89,42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134,130,000
		15층	3	220,927,340	237,672,660	458,600,000	91,72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137,580,000
		4층	4	161,528,428	173,771,572	335,300,000	67,06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33,530,000	100,590,000
		5층	4	167,116,647	179,783,353	346,900,000	69,38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104,070,000
		6층	4	172,656,691	185,743,309	358,400,000	71,68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35,840,000	107,520,000
		7층	4	178,244,910	191,755,090	370,000,000	74,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8층	4	183,833,129	197,766,871	381,600,000	76,32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38,160,000	114,480,000
		9층	4	189,373,173	203,726,827	393,100,000	78,62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39,310,000	117,930,000
		10층	4	194,961,392	209,738,608	404,700,000	80,940,000	40,470,000	40,470,000	40,470,000	40,470,000	40,470,000	121,410,000
		11층	4	200,501,437	215,698,563	416,200,000	83,24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41,620,000	124,860,000
12층	4	206,089,655	221,710,345	427,800,000	85,56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42,780,000	128,340,000		
13층	4	211,677,874	227,722,126	439,400,000	87,88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43,940,000	131,820,000		

		14층	4	217,217,919	233,682,081	450,900,000	90,180,000	45,090,000	45,090,000	45,090,000	45,090,000	45,090,000	135,270,000
		15층	4	222,806,138	239,693,863	462,500,000	92,50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46,250,000	138,750,000
29C	24	4층	1	160,661,291	172,838,710	333,500,000	66,70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100,050,000
		5층	1	166,345,858	178,954,142	345,300,000	69,060,000	34,530,000	34,530,000	34,530,000	34,530,000	34,530,000	103,590,000
		6층	1	172,078,600	185,121,400	357,200,000	71,44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35,720,000	107,160,000
		7층	1	177,763,167	191,236,833	369,000,000	73,8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8층	1	183,495,909	197,404,091	380,900,000	76,18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114,270,000
		9층	1	189,180,476	203,519,524	392,700,000	78,54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117,810,000
		10층	1	194,865,044	209,634,957	404,500,000	80,900,000	40,450,000	40,450,000	40,450,000	40,450,000	40,450,000	121,350,000
		11층	1	200,597,785	215,802,215	416,400,000	83,280,000	41,640,000	41,640,000	41,640,000	41,640,000	41,640,000	124,920,000
		12층	1	206,282,353	221,917,647	428,200,000	85,64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128,460,000
		13층	1	212,015,094	228,084,906	440,100,000	88,02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132,030,000
		14층	1	217,699,662	234,200,338	451,900,000	90,380,000	45,190,000	45,190,000	45,190,000	45,190,000	45,190,000	135,570,000
		15층	1	223,432,403	240,367,597	463,800,000	92,76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139,140,000
		4층	1	162,540,088	174,859,912	337,400,000	67,480,000	33,740,000	33,740,000	33,740,000	33,740,000	33,740,000	101,220,000
		5층	1	168,272,830	181,027,170	349,300,000	69,860,000	34,930,000	34,930,000	34,930,000	34,930,000	34,930,000	104,790,000
		6층	1	173,957,397	187,142,603	361,100,000	72,22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108,330,000
		7층	1	179,690,139	193,309,861	373,000,000	74,6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8층	1	185,374,706	199,425,294	384,800,000	76,96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115,440,000
		9층	1	191,107,448	205,592,552	396,700,000	79,34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39,670,000	119,010,000
		10층	1	196,792,016	211,707,985	408,500,000	81,700,000	40,850,000	40,850,000	40,850,000	40,850,000	40,850,000	122,550,000
		11층	1	202,476,583	217,823,417	420,300,000	84,060,000	42,030,000	42,030,000	42,030,000	42,030,000	42,030,000	126,090,000
12층	1	208,209,325	223,990,675	432,200,000	86,44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43,220,000	129,660,000		
13층	1	213,893,892	230,106,108	444,000,000	88,8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14층	1	219,626,634	236,273,366	455,900,000	91,18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136,770,000		
15층	1	225,311,201	242,388,799	467,700,000	93,540,000	46,770,000	46,770,000	46,770,000	46,770,000	46,770,000	140,310,000		
42A	12	4층	1	238,318,262	256,381,738	494,700,000	98,940,000	49,470,000	49,470,000	49,470,000	49,470,000	49,470,000	148,410,000
		5층	1	246,363,370	265,036,630	511,400,000	102,280,000	51,140,000	51,140,000	51,140,000	51,140,000	51,140,000	153,420,000
		6층	1	254,408,478	273,691,522	528,100,000	105,62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52,810,000	158,430,000
		7층	1	262,453,586	282,346,414	544,800,000	108,96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163,440,000
		8층	1	270,498,695	291,001,306	561,500,000	112,30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168,450,000
		9층	1	278,495,628	299,604,372	578,100,000	115,620,000	57,810,000	57,810,000	57,810,000	57,810,000	57,810,000	173,430,000
		10층	1	286,540,736	308,259,264	594,800,000	118,96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178,440,000
		11층	1	294,585,845	316,914,156	611,500,000	122,30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61,150,000	183,450,000
		12층	1	302,630,953	325,569,047	628,200,000	125,640,000	62,820,000	62,820,000	62,820,000	62,820,000	62,820,000	188,460,000
		13층	1	310,627,886	334,172,114	644,800,000	128,960,000	64,480,000	64,480,000	64,480,000	64,480,000	64,480,000	193,440,000
14층	1	318,672,995	342,827,006	661,500,000	132,30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198,450,000		
15층	1	326,718,103	351,481,897	678,200,000	135,640,000	67,820,000	67,820,000	67,820,000	67,820,000	67,820,000	203,46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락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항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업선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동일 주택형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하였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 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로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 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 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 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정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 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색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일시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5.1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 PC 또는 스마트폰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24A	24C	28A	29A	29C	42A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	2	2	1	-	7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2	-	-	4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2	-	1	1	-	-	4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	-	4	
	장애인	2	-	3	2	1	-	8	
	계	8	1	8	8	2	-	2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역기준	서울시 거주자(50%)	3	1	4	4	1	1	14
		경기도 및 인천시 거주자(50%)	3	-	4	4	1	1	13
		계	6	1	8	8	2	2	27
신혼부부 특별공급		13	2	17	17	5	2	5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	3	3	1	-	9	
생애최초 특별공급		5	1	6	6	2	1	21	
합 계		34	5	42	42	12	5	14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서울시 중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함.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재(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음(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

	<p>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청약자격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위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에 의거 제35조제1항, 7호(군인복지기본법),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추천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②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 복지단 ③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④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세대수 : 전용 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제외 및 계약불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p>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세대수 : 전체건설량의 10% 범위 내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공급(경쟁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p>신혼부부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기타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세대수 : 85㎡이하 건설량의 20% 범위 내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함.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② 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호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선정 순서(소득→순위→거주지역→미성년자녀수) , 2순위 경쟁시 동일방법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공급 70%→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 ▷일반공급 30%→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자→추첨 (※ 일반공급 30%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선정) ① 소득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선공급 70% : 소득 10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2) 일반공급 30% : 소득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 ② 순위 - 같은 소득기준 및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한자 (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p>※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됨.</p>
<p>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세대수 :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내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p>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격요건 :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1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p>②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p>생애최초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한정으로 구입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확인가능 한 자녀)가 있는자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p>(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세대수 : 85㎡이하 건설량의 7% 범위 내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

※ 임신 또는 자녀를 입양한 부부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됨. 단,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함에 따라 아래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p>※ 청약 신청유의사항,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p>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 됨.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받지 않음) ■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됨. (2순위로만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포함)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2)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함) (3)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재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음) <p>※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조회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p>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 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10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 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100%	0%
전용면적 85㎡ 초과	50%	50%

- 2007.09.0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4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21.05.14.(금) (인터넷청약 : 08:00~17:30) (방문접수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 PC 또는 스마트폰 • 건본주택 방문접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2021.05.17.(월) (인터넷청약 :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앱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1.05.18(화) (인터넷청약 : 08:00~17:30)		
	2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1.05.20(목) (인터넷청약 :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는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하나,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청약 Home www.applyhome.co.kr 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 시간(건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순위 청약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는 “해당지역(서울특별시)”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 “해당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 접수시 부적격 처리)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해당지역 청약 접수자는 청약 전 반드시 서울시 전일일 확인 요망(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 확인 요망) - 본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신청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미만 거주신청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함.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민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바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주 은행 주택공급신청자_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 Home(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본 입주민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선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서울시 2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5.26(수)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5.27.(목)~2021.05.31.(월)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6.07.(월)~2021.06.11.(금) (10:00~16: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 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동·호수 배정에 참여시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동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 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지위를 인정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5.26.(수) ~ 2021.06.04.(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5.2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6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일반공급)	2021.05.27.(목)~ 2021.05.31.(월) (10:00~16:00)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	건분주택 비치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함)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및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0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0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0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일반(기관추 천) 특별공급	0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 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전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 성 점수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해당자 모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 발급)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0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0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0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증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건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자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해당자 필수)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 받은자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0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0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0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일,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	①, ②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세무서 ②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장소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0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안내	2021.06.07.(월) ~ 2021.06.11.(금)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및 정부정책이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 견본주택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시 중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 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 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0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0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0	0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0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0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입금증	0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0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위임장		0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0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약금	우리은행	1006-401-545457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 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 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직접납부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한 매월 이자 납입일에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8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별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24A	24C	28A	29A	29C	42A
발코니확장금액		2,658,000	5,069,000	3,226,000	2,400,000	4,833,000	10,148,000
계약금	계약시	265,800	506,900	322,600	240,000	483,300	1,014,800
잔금	입주지정일	2,392,200	4,562,100	2,903,400	2,160,000	4,349,700	9,133,200

■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근거

TYPE	골조 및 마감	창호	주방가구	입면분할창호	발코니확장비용계	부가세	총 계
24A	400,125	113,088	-	1,904,000	2,417,213	241,721	2,658,934
24C	1,078,352	197,904	-	3,332,000	4,608,256	460,826	5,069,082
28A	512,325	135,705	-	2,285,000	2,933,030	293,303	3,226,333
29A	367,125	101,779	-	1,713,000	2,181,904	218,190	2,400,094
29C	1,066,560	186,595	-	3,141,000	4,394,155	439,416	4,833,571
42A	2,065,404	401,462	-	6,7559,000	9,225,866	922,587	10,148,453

※상기 산출금액은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가격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으로 천원단위이하는 절삭하여 확장금액으로 정함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시공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 및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하며, 일부 침실 및 발코니가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 돌출, 실사용면적의 감소,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 축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에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선반의 설치유무, 수량, 크기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량에 따라 확장금액에 반영됨.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람.
-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 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기본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 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유상옵션)

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	업체명	일반형	공기청정형	비고
24A 24C	거실	삼성전자	1,400,000	1,700,000	실내기 1대
28A 29A 29C	거실		1,550,000	1,850,000	실내기 1대
42A	거실,침실1,침실2		3,400,000	4,300,000	실내기 3대

② 특화품목

(단위 : 원 / VAT 포함)

TYPE	품목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액	비고
24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4,3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0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불박이장	미제공	가전소물장, 불박이장	14,800,000	
24C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5,1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0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불박이장	미제공	가전소물장, 불박이장	14,800,000	
28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4,7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0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3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불박이장 및 히든도어	미제공	가전소물장+불박이장 및 히든도어	14,800,000	
29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4,6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0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3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불박이장 및 히든도어	미제공	가전소물장+불박이장 및 히든도어	15,800,000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5,900,000	
29C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0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3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400,000	
	불박이장 및 히든도어	미제공	가전소물장+불박이장 및 히든도어	15,800,000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10,400,000	
42A	거실 아트월	일반타일 (400*800)	대형타일 (600*1200)	2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900,000	
	주방 상부장	여닫이장	플랩장	9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6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600)	박판타일 (600*1200)	500,000	
	침실 불박이장	미제공	제공	13,400,000	

③ 가전품목

(단위 : 원 / VAT 포함)

TYPE	품명	제조사	모델명	금액	비고
전타입	콤비냉장고	삼성전자	RL2640Z(Y)BBEC	700,000	-
	의류관리기	엘지전자	S3HFB	1,250,000	-
			S3DFB	1,290,000	특화옵션 '불박이장' 또는 '불박이장 및 히든도어' 선택 시 적용 가능
	드럼세탁기	삼성전자	WW90T3000KW	470,000	-
	의류건조기	삼성전자	DV90T5540BW	1,050,000	드럼세탁기 선택 시 가능

④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천장형 카세트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각 타입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를 확인 요망)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는 거실, 침실1(29타입)이하 거실/침실 1개소, 42타입 거실, 침실1 2개소)에만 설치됨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콤비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평면에 따라 문 열리는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 의류관리기 유상옵션 선택 시 제품 특성상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드럼세탁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입주자가 원하는 용량의 세탁기가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설치공간 확인 필요할 수 있음.
- 의류건조기 유상옵션은 드럼세탁기 유상옵션 선택 시에만 설치 가능하며, 드럼세탁기와 전용키트로 체결되어 설치됨.
- 유상옵션 가전류는 제품 특성상 진동 및 소음,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시공상의 이유로 일정 공정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산정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평형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을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 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표기 (침실1,2등)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우리은행	1005-303-72814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잔금	우리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 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추가선택 품목대금 중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한 잔금은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마감재/가구 선택, 가전기기 선택 등)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별도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 ②건축물관리대장:처리일 ③기타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시장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85㎡ 이하의 단독주택, 다.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모집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제76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일반공급 청약 기점제 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2]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

택공시가격을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청약가점제 시행전인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배치 특성상 형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외벽은 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구부가 설치되며,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배수구 및 환기 디퓨져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 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헬름,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쓰레기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 및 입면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록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구조 및 흙막이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 기본주택에는 일부 설계변경 예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기본주택에는 24A, 28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C - 24A, 29A&29C - 28A 참고)
-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기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재, 제품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에는 타입별로 옵션품목 시공유무가 상이하니 안내문구 및 카탈로그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기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기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기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기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상담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기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사양,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기본주택 및 CG,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기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기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계약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외관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수영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기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약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약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기본주택용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기본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기본주택 오픈전 기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기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 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기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예정입니다.
- 기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세대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물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기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차도 및 보도), 공공청사, 학교, 근생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종교시설, 지하철 역사 및 노선, 버스정류장 및 노선,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종 인허가 과정 및 시행주체 또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견본주택내 시인물 및 모형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보육시설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약도 및 지도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의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

1. 일반사항

- 본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구조 및 흠막이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일부 계획변경이 수반되며,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후 최종사업시행인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방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물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은 획지별로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시의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정비구역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 또는 공원 등이 아니므로 입주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 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공동주택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구역의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구역내 계획된 공원, 녹지,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현재 계획된 주변 공원과 녹지 계획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비율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비율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아간조명 및 경관조명, 축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구역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공조명, 단지 홍보물, 시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당 사업지 동측에 위치한 중구 마린대로 85-5 일원(1198㎡ 규모)은 기부채납 부지로 2021년 3월 26일 체결된 중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의 공공부지 개발 위,수탁 계약에 의거하여 지하3층-지상12층 규모의 “중구 인쇄스마트영커” 시설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권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단지배치/조경

- 공동주택은 총 1개동, 최고 26층 높이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차로 폭 6.5m~7.2m)은 지하8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상 4층~15층(임대형 40㎡형은 지상 4층~17층까지 계획)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상16층~2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 지하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구분없이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보행출입구(H5.3m)는 단지 서측 및 남측에 위치해 있으며, 서측은 공동주택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고, 남측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로비는 보안정책에 의해 출입통제됩니다.)
 - 차량진출입구는 단지 북서측에 위치해 있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하2층에 비주거용 주차구획이 1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 및 지층상상 변동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에 인접한 등의 경우 주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재,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항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 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상가,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원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동 등기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실외 주민운동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공동주택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보관소는 지하2층에 반영될 예정이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및 조경계획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수기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관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분양구분(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는 천정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둥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구성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부대복리시설용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한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근생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펌프실, 전기실, 정화조는 하부지하층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자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용 덕트 및 배기팬, 비주거용 정화조 급배기 덕트 및 팬은 옥탑에 설치될 예정이며, 덕트는 공동주택 공용PD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시공될 예정임. 추후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용 덕트의 사이즈는 당사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될 예정이며, 추후 대형주방배기를 필요로 하는 식음료점(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그 외)은 별도의 주방배기덕트 및 관련설비공사, 관련 인허가 및 발생하는 민원 등의 해소등을 입점자 공사분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사항
 - 단지 내 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 중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김해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면,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상가 커튼월에 설치되는 입면 게이트프레임디자인에 의해 조망권 및 일조권이 일부 가려질 수 있으며, 게이트프레임디자인은 인허가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위치변경 및 규모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 및 근생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별도 구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과 동일한 차량진출입구를 이용하므로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주행 유효 높이는 2.9m이며, 통로폭은 7.0m입니다. 지하주차장 기준층의 주행유효 높이는 통로구간 2.3m, 주차구간 2.1m이며 통로폭은 6.5m로 택배차, 사다리차, 이사차량, 트럭 등의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2층 폐기물보관소 및 택배보관소 인근까지 통로구간의 유효높이는 2.7m까지 확보되어 있으나, 배관, 배선, 소방시설 설치에 따라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자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는 설치되고,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하며,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램프는 석재, 석재뿔칠, 수성페인트 등 혼용되어 시공되며, 디자인 및 상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동주택주동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승강기 인승, 속도, 탑승위치)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의 외벽마감은 화강석 및 커튼월로 마감될 예정(계단실 등 코어 외벽, 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석종,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은 현장여건 또는 각종 인중 등에 따라 설치 유무, 규모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지하2층에 설치 검토중인 검토중에 있는 무인택배시스템(세대수에 비해 설치개소가 적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은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각 층에 제연실(제연헬륨)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 ■ 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별 위치 및 조건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EV,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계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공동주택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용 덕트 및 정화조 덕트가 공동주택 공용PD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서측면에 인접 건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서향 일사 차폐를 위한 루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루버 디자인, 규격, 재질 및 적용상세는 인허가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견본주택모형에서의 형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단위세대

<공통>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니 카탈로그 및 **미건립평형 CG**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분전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의 내부 구성, 도어의 위치 및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준공시 주택법 관련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부 세대에 방음벽 설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4m이며, 실시공사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내부에는 물전격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창의 경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환경기장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를 설치하는 공간의 세탁기수전은 공간의 제약으로 세탁기 배치시 세탁기 뒤쪽으로 설치되어 사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입의 경우, 세탁기 설치공간장 상부에 환기를 위한 디퓨져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세대내 우물천장 상부(가구장 상부)에 벽부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29A와 29C타입에는 인허가 협의조건에 따라 세대 내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본 단지는 직통계단인 2개소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대피공간(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대상이 아니며, 다른 타입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없습니다.) 또한 각층의 복도 끝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마감재>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유니트(28A)는 모든 유상옵션을 적용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옵션을 계약하지 않은 경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재(위생도기, 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천정물당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완충재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랍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 상, 하부 및 후면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한.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인별 아트월 길이 및 위치, 벽체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CG, 카탈로그 등 안내문을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외산 하드웨어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루의 제조사, 형태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의 루버를 반드시 단음을 유지하여 외기침입을 차단해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배관 동파사고 발생등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지함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분전함, 통신 단지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지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되는 평면의 경우,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가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공용배기팬(주방배기)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팬, 주거 및 비주거 정화조용 팬에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흡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규격 및 개수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으로 적용되어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후렉시블호스 등 관련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견본주택에는 미설치되어 있음)이며, 전열교환기 등의 설치로 인해 일부 선반의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견본주택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본 공사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다류저는 거실과 각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배기구(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용, 형태 및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설비가 올라와 냄새 및 분진, 소음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 위치 및 근부적인 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입구 근처 세탁기 및 건조기(이단 설치)설치 공간을 사용할 경우, 장비가동으로 인한 습기 및 발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사용 시 필히 설치공간 가구장 문을 열고 사용하시어, 발열로 인한 장비고장 및 가구장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와 도심형생활주택의 세대 내 각종 위생 및 가스배관, 덕트 등은 공용으로 사용되며, 기계실 등에 위치한 기계장비(소방시설 포함)들도 공용장비로 시공됩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가스밸브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 LGU+, SKT) 혹은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 서비스 중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 등의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해당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해당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발코니 외벽 / 축벽 /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정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벽체에 결로방지단열재로 인한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본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투기지역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이후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체결하는 최초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또한, 사업 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주요사항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및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2021-0128-00008541	₩74,374,51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 토지신탁 고지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업은 위탁자인 더유니스타제이차(주)가 매도인 겸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더유니스타제이차(주)이고, 매도인 겸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는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우리자산신탁(주)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우리자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신탁재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탁자 더유니스타제이차(주)가 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2.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3.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위탁자 더유니스타제이차(주)와 대우건설(주)가 부담하며, 매수인("을")은 우리자산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은 위탁자 더유니스타제이차(주)와 매도인 겸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가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을")에게 공급계약 대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더유니스타제이차(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5. 매수인("을")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차호	적용 KS F2292 차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변압기, 전동기, 펌프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거실,침실,주방 / 각 실 1개소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내 일괄소등장치 적용 - 60㎡미만 미적용 / 세대내 1개소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 이상제품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 화장실 당 1개소 이상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 각 실 1개소 적용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 설치 수전 절수형 설비 적용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세운6-3-4구역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2. 신 설 자 : 더유니스타제이차 주식회사
 3.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세운6-3-4구역)
 4. 성능 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일괄소등장치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 생활환경개선	★★★★	21. 자연지반 유지율	★
3. 세대 간 결계벽의 차음성능	★★★★	22. 상해면적률	★★
4. 교통소통(도보, 실도)에 대한 실내·외 소통도	★	23. 비오류 조성	-
5. 최정실 금배수 소용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적용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차등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입지내·외 불행자 집중도율 조성 및 연결	-
2. 기밀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수리용이성(공동부위)	★	3. 저층거주자실 및 저층거주자의 책임성	-
4. 수리용이성(공공부위)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다. 환경 관련 등급		마. 회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1. 감차 및 경보설비	★★
2. 과도한 지리개발 지양	-	2. 계엄설비	★
3. 토공사 절감도량 최소화	★★★★	3. 내화성능	★
4. 일조권 감압방지 대책의 타당성	-	4. 주택피난거리	★★
5. 에너지 성능	★★★	5. 복도 및 계단 유층너비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설치	★★★	6. 피난설비	★
7. 입·출구 에너지 효율	★★★★		
8. 차양수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	★★		
9. 오염물 배출을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첨가제(중금속) 사용	★★★★		
11. 차단소 차재의 사용	★★★★		
12. 차열차단 차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차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방음관리	★★★★		
17. 빗물 및 우수저수 이용	★★★★		
18. 우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저류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한 국 감 정 원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서울8-3-4구역 재개발사업 신축공사	인증번호	: 2020-087
건축주	: 머큐리스피레아주식회사	인증기준	: 한국감정원
주요(예정)일	: 2022.09.30.	유효기간	: 2020.04.03. - 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 (서울8-3-4구역)	인증 등급	
층수	: 지하9층, 지상26층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면적	: 51,051.7381㎡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건축형태	: 공동주택		
설계자	: 다이애그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감정원



2020년 04월 0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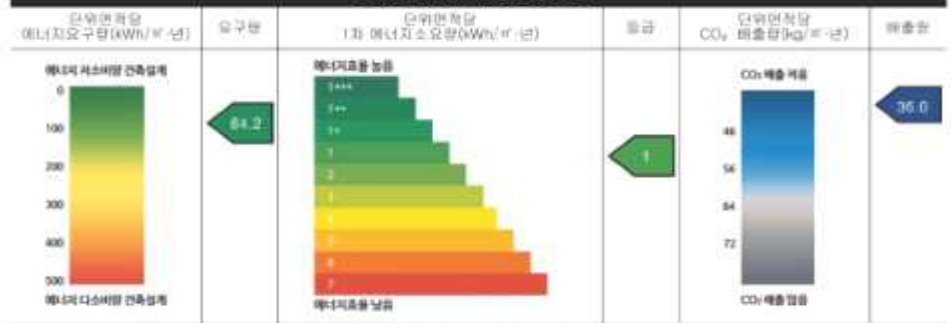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를 표시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서울8-3-4구역 재개발사업 신축공사(주거)	인증번호	: 20-주-에-1-0041
준공연도	: 2022년 09월 30일	평가자	: 오성환
주소	: 서울 중구 마천동로 82 (인현동2가)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층수	: 지하9층 / 지상26층	준발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45275.3731㎡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 다이애그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m²·년)
냉방	0.0	0.0	0.0
난방	43.3	108.2	22.9
급탕	30.7	35.9	7.3
조명	16.2	8.3	4.4
환기		3.0	1.4
합계	84.2	156.4	36.0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차질,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됨 () 설치되지 않음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만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2020년 03월 26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우측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금 액
1. 택지비	47,633,416,270원
2. 직접 공사비	33,957,940,444원
3. 간접 공사비	3,773,104,494원
4. 설계비	569,801,496원
5. 감리비	1,076,010,157원
6. 부대비	844,804,344원
7. 그 밖의 비용	36,916,880,682원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구 분	감 정 기 관	감 정 금 액	평 균
감정평가금액	가온 감정평가법인	122,592,723,000원	122,761,583,500원
	나라 감정평가법인	122,930,444,000원	

※ 상기 금액은 세운재정비축진지구 6-3-4구역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택지 감정평가금액임.

■ 감리 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비고
회 사 명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진관엔지니어링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669,692,200	574,015,500	366,300,000	136,4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위탁사
상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대우건설	더유니스타제이차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삼성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2137895	110111-2995839

■ 견본주택 위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9(역삼동 677-28)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견본주택 (분양문의 ☎ 1577-2237)

■ 현장 :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www.prugio.com/ht/2021/sewoon/)

-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